

대학원 학사제도 변경사항

1. 연구윤리 교육 의무 이수

시행시기	변 경 전	변 경 후
2015.3.1	없음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논문 제출 전까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여야 함. ★ 연구윤리 관련 교내 특강, 외부 교육, 이러닝 교육 이수 등 교육 수료를 증빙할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연구윤리교육 이수로 인정 함.

※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컨설팅대학원) 논문제출자 모두 해당 됨.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술지 게재 요건 추가

시행시기	변 경 전	변 경 후
2015.3.1	없음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는 입학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외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학위취득일 이전에 논문이 게재된다는 허가를 받거나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함

3. 대학원 지도교수 위촉시기 변경

시행시기	변 경 전		변 경 후	
2015.3.1				
	구분	시기	구분	시기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후 첫째 학기 제2주차 : 학생신청 및 지도교수 확인 제3주차 : 주임교수 승인 제4주차 : 지도교수 위촉 확정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후 첫째 학기 제7주차 : 학생신청 및 지도교수 확인 제8주차 : 주임교수 승인 제9주차 : 지도교수 위촉 확정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첫째 학기 제13주차 : 학생신청 및 지도교수 확인 제14주차 : 주임교수 승인 제15주차 : 지도교수 위촉 확정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4. 전과제도 시행

시행시기	변 경 전	변 경 후
2014.9.1	없음	○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 가능 1. 전과 신청원서 2. 전출학과 동의서 3. 전입학과 지도교수 추천서 4. 성적증명서 ○ 전과 전 이미 이수한 학점 가운데 변경된 학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의 학점을 인정 가능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5. 박사과정 선수과목 이수 지정 가능

시행시기	변 경 전	변 경 후
2014.9.1	없음	○ 비동일 계열 또는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입학할 경우 9학점 이내에서 선수과목 이수를 지정할 수 있음. ○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수 및 교과목은 학생 개인별로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학과 교수 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지정하며, 선수과목 이수가 지정된 학생은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함. ○ 선수과목은 학기당 이수학점 이외에 매학기 3학점 이내로 추가 이수할 수 있음.

6. 일반대학원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운영 규정 제정

시행시기	규정 제정
2014.10.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금오공과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학·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부)·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5년(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6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시기	규정 제정
	1. 학사학위과정은 3.5년(7개 학기)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4.5년(9개 학기)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은 1.5년(3개 학기)으로 한다. ②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4조(선발인원 및 시기) 선발인원은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 입학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며, 선발 시기는 매학기 개시 전으로 한다. 제5조(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는 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을 가진다. 1. 5개 학기 또는 6개 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개 학기 또는 8개 학기) 이수자 2.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0 이상인 자 또는 직전 2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3.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제출서류) 연계과정 지원자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지원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계획서 4. 성적표 1부 제7조(선발방법) 연계과정자는 학사학위과정성적·추천서·연구계획서와 해당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선발한다. 제8조(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① 연계과정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매학기 24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연계과정 학과의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자가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전공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취득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9조(연계과정 이수 중도 포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계과정 이수를 중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 이수를 중도 포기한 자 2. 7개 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개 학기) 이내에 학사학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50 미만인 자 3.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연계과정 대학원 학과의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대학원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포기원을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연계과정 포기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0조(학사학위과정 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 연계과정자가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체 성적 평점평균을 3.50 이상 취득 2. 대학원 연계과정 학과의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취득 3. 대학원 첫 학기 등록금 납부

시행시기	규정 제정
	② 제1항에 의하여 연계과정으로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학사학위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학원입학지원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자는 학사학위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연계과정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연계과정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등록 및 휴학) ① 연계과정으로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계과정 포기자는 8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후 3개 학기 내에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4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3조(연계과정 선발자에 대한 특전) ① 연계과정자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한다. ② 연계과정자에게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등록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계과정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 각 학과 교육조교 임용 시 우선 선발한다. ④ 연계과정자에게는 학사학위과정의 졸업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연계과정자에게는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적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에는 학사학위과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그 밖에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4. 10. 23. 규정 제84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운영 규정 제정

시행시기	규정 제정
2014.10.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금오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금오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말한다.

시행시기	규정 제정
	제3조(설치대상) 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 설치한다. 제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으로 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선발인원 및 시기) 선발인원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며, 일반대학원 입학생 모집 시에 선발한다. 제6조(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과정의 지원자격을 가진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금오공과대학교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제7조(선발방법) 선발방법은 일반대학원 입학전형으로 선발한다. 제8조(이수학점) 이수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제9조(지도교수 위촉 및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통합과정 학생은 제1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② 통합과정 학생은 제5학기 초에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제출 자격) 제8조의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이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어 시험)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 시험 응시자격을 가진다. 제12조(종합시험) 5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가진다. 제13조(학위의 수여) ①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는 수여하지 않고,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과정을 이수하는 자 중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여 석사학위를 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이수 중 석사학위 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4. 10. 23. 규정 제8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